

日本法科大学院協会＝韓国法学専門大学院協議会 第1回交流プログラム

일본법과대학원협회 =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회 제 1 회 교류 프로그램

JALS & KALS 1st Exchange Program

共同シンポジウム 공동 심포지움

**「ロースクールの成長と課題」**

**“로스쿨의 성장과 과제”**

Collaborative Symposium

**"THE GROWTH OF LAW SCHOOLS AND THEIR CHALLENGES"**

2012 年 5 月 12 日

##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교토대학 무라나카 타가시(村中孝史)

들어가는 말

이미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20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개설되고,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신사법시험이 실시되어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올해까지 8년이 지났지만, 전국에 74개교가 존재하는 법과대학원은, 지금까지 25,80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2012년 3월말 현재), 11,105명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사법수습을 끝낸 인원이 8,642명, 변호사등록자수가 약 7,600명이므로, 일본의 변호사 총수(32,134명: 2012년 4월 1일 현재)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법조계에서 법과대학원 수료생이 점하고 있는 비율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지만, 요 몇 년간, 법과대학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비판이 일어, 무척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제가 보고 드리고, 서울대학 법과대학원장이신 정 교수님의 보고내용도 참조하여, 토론회를 통해 한일 양국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 1.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의 경위

#### (1)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법과대학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일본에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 법학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점(1963년~1990년에는 연간 500명 전후, 1991년~1998년에는 연간 800명 전후)과 수험회수의 제한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합격률이 매우 낮아져 (1960년대에 3%대, 1975년 전후부터는 1%대까지 저하), 『현대의 과거시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수험경쟁을 초래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장기간 시험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고시학원에 의존해 법학의 기본적인 문헌조차 읽지 않고 정형화 된 모범답안을 그대로 암기하는 공부방법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리·원칙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힘이나 사안을 분석하는 힘이 저하되어 실무에 나와서도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자질의 편향이 우려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우수하고 건전한 균형감각을 가진 학생이 법조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구가 억제된 결과, ①변호사가 도심에 편재해 법적 해결의 기회를 빼앗긴 지역이 생겨나거나 ②법조인의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국민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③재판이 장기화 되어, 재판 외에서의 불공정한 분쟁해결이나 형사사법의 경직화가 초래되는 폐해가 생겨났습니다.

## (2)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본구상

이러한 상황에서, 1997 년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내각에 설치되어 21 세기 일본사회에서 사법이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보다 더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 등에 필요한 방안에 관하여 조사·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의 결과는 1999 년 6 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건의서』로 정리되어, 그 중에서 「사법시험이라는 『점(点)』에 의한 선발만이 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과정』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논의와 그 핵심으로써 법과대학원제도의 설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과대학원에서는 그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당한 비율(예를 들어 약 70~80%)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도록 충실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해서 「사법시험을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을 고려한 시험으로 전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비 상황 등을 확인해가면서, 2010 년경에는 신사법시험 합격자수 연간 3,000 명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의견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위한 법적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질과 양 모두가 풍부한 법조인을 확보할 필요성을 대전제로 하여, 그 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할 것을 지향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법과대학원에는 비법학부 출신자나 사회인에 대해 열려있는 입학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육성할 것이 요청되었고, 수업에서는 이론적 교육과 실무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소수 인원을 기본으로 하는 쌍방향·다방향의 수업을 실시하고, 엄격한 성적평가·수료인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신사법시험에 관해서는 법과대학원 수료자에게 수험자격을 인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내용도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을 고려한 내용일 것이 요청되었고, 5년 3 회의 수험회수제한이 도입 되었습니다.

## 2.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

### (1)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수와 사법시험합격자수의 불균형

위와 같은 생각에 기초한 새로운 법조인 생성제도는 이미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착실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법과대학원 발족 당시부터 염려되었던 문제, 즉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수와 시험합격자수의 불균형을 둘러싼 문제가 제도 전체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수가 사법시험합격자수를 크게 웃도는 상태는 당연히 법조인 자격을 얻지 못한 수많은 법과대학원 수료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선, 법조자격을 얻지 못하는 위험을 두려워하여 법과대학원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대로는 우수한 인재를 법조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인을 법과대학원에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조한 합격률은 수험경쟁을 다시금 격화시켜, 법과대학원 교육이 사법시험 과목에 치우치거나 학생이 시험대책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의 폐해를 다시금 불러 일으키는 것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발전·첨단과목이나 법률실무기초과목 등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를 만들어 법과대학원생의 시야를 좁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도모한다는 사법제도개혁의 목적을 저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확보나 법조인의 활동영역 확대가 곤란해지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감소시키려는 압력이 보다 강해져,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제도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 법과대학원 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법과대학원의 수와 수료자수의 과잉

그렇다면 어째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예상보다 많은 법과대학원이 발족되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70~8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 수를 20~30 개교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4 개교가 개교하였고, 입학정원은 약 5800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법과대학원 유치경쟁이 과열된 것도 있지만, 시장원리를 중시한 규제완화론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대학에 법조인 양성에 참가할 기회를 인정하여, 그 경쟁으로 보다 높은 교육수준과 지역간 격차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법과대학원은 시장의 선택에 의해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법과대학원 간의 격차는 현저합니다. 2006 년도부터 2011 년도 사이에 실시된 신사법시험의 누적합격률(2005 년도부터 2010 년도 수료생의 총수에 대한 2006 년도부터 2011 년도에 실시된 신사법시험 합격자 총수의 비율)은 전 법과대학원으로 보면

43%이지만, 70%를 넘는 법과대학원이 3 개교, 60%대가 4 개교인 것에 비해, 평균의 반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과대학원이 26 개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신사법시험 합격자총수 11,105 명 중 누적합격률 상위 20 개교의 수료자가 약 75%, 나아가 상위 40 개교의 수료자가 약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 (3) 사법시험의 합격자수의 정체(停滯)

저조한 합격률을 초래한 또 하나의 원인은 사법시험합격자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02 년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사법시험위원회에서는 2010 년경에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0 명으로 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밝혔으나, 2008 년부터 그 목표를 밀들기 시작하여 2009 년 이후로는 2,000 명에서 2,100 명 사이에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배경에는 법과대학원제도나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두 가지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법과대학원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문제점

### (1) 법조인구의 과잉

첫번째 비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직난이나 변호사의 소득 감소 등을 논거로 한, 이미 법조인구는 포화 내지는 과잉상태이며,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이 이상 증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혹은 오히려 감소시켜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요수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업계에서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여전히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마을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변호사의 적정배치의 문제는 남아있고,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나 국민참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형사변호인의 확보가 충분한지에 관한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사법제도개혁은 법조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변호사의 종래 업무나 직무태양을 전제로 하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 법조인구의 증가와 직무영역의 확대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내변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는 사람, 혹은 새로운 업무개척이나 직무태세를 시험해보는 젊은 세대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법적 서비스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속에서, 일본 법조인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싹을 짓밟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2) 법과대학원 교육의 질의 문제

둘째 비판은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의 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 속에서 법과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 혹은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앞서 말씀 드린 법과대학원 사이에서 보이는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외에도,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법률기본과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해나 법적 사고력 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법과대학원 수료생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법연수원의 담당자나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받아들이는 관계자들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창조성이 있으며, 자주성이나 다양성, 조사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과목수나 습득이 요구되는 법적 지식도 구사법시험 시대와 비교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 필기시험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단순히 이전과 지금의 질을 비교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라고 하여도,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여 법조인이 되는 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법과대학원은 입학정원의 재검토나 입학시험의 경쟁배율 유지, 공통적 도달목표를 책정하여 수업의 개선이나 성적평가의 엄격화 하는 등등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 4.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제도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래 제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역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는 법과대학원 외적인 요소에 인한 면도 있으므로, 법과대학원만이 아니라 사법의 사용자인 국민의 시점도 고려하여 관계자가 협력하여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법과대학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법과대학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수준을 한 층 더 개선하고, 이와 함께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과대학원과 사법시험 사이에 충분한 연계를 꾀하여,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사법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조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보다 넓히며, 변호사의 직무태양이나 신입변호사의 육성체제의 재검토·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법은 결코 법조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장래를 그리고 이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귀중한 경험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 표 자 : 정 종 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목 차 ❧

### I.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현황

1. 제도 도입 .....	2
2. 설치 인가 .....	3
3. 법학적성시험 .....	5
4. 학생 선발 .....	6
5. 교육 과정 .....	6
6. 장학금 등 학생복지 .....	8
7. 변호사시험 .....	8
8.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 변호사 연수 .....	9

### II.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

1. 실무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	11
2.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	13

#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현황

## 1. 제도 도입

### ▣ 도입 배경

- 기존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하에서 제기되었던 법학교육의 폐쇄성, 전문인력양성의 불충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법학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3년제 전문석사과정으로서, 25개 대학에 설치

### ▣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1)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 이수자/미수자 구분없이 동일과정(3년)으로 진행됨

2)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非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없음

(舊)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구 분	(新)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힘든 학부 교육의 한계</li> <li>• 법학부 이론교육,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이원화</li> </ul>	<b>법학 교육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된 법률가 양성</li> <li>•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li> <li>• 암기식 위주의 시험 준비</li> <li>• 장기간 수험기간으로 인한 고시낭인 발생</li> </ul>	<b>법조인 양성제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li> <li>• 엄격하고 다양한 입시 기준에 의한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인의 전문성 결여</li> <li>• 법조인의 다양한 직역 진출 한계(송무중심)</li> </ul>	<b>전문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 실시</li> <li>• 다양한 학부출신 및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직역 확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의 수임료로 인한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li> <li>•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어려움</li> </ul>	<b>법률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수임료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li> <li>• 다양하고 전문화된 신규시장 수요창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고시 준비로 인한 국가적인 인력낭비</li> <li>•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부족</li> </ul>	<b>국가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 강화</li> <li>•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li> </ul>

## 2. 설치 인가

### ▣ 설치인가 방식

- 일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가 이를 선별해 설치인가 하는 ‘인가주의’ 방식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치인가**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 법학계 4인, 법조계 4인, 공무원 1인, 일반인 4인 [총13인]
  - 기능 : 설치인가 심사 및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심의 등

## ▣ 설치인가 주요 심사기준

구분	주요 내용
교육목표	• 다양한 영역에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b>특성화 목표 설정</b>
입학전형	• 사회적 취약계층(특별전형) 5%이상 선발 • 비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 1/3이상 선발
교육과정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b>외국어 강의 수</b> • <b>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b> 심사
교원	• 교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채용 교수 중 <b>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미만 만점)</b> • <b>여성교수 채용실적(10%이상 만점) 및 계획(25%이상 만점)</b> 평가
학생	•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b>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b> 설정 • 그간의 법학 관련 학생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b>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b> 를 심사기준에 포함
교육시설	• <b>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b> (장서 확보 실적 및 계획 포함) • 강의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구축
재정	• 건전한 대학 재정운영과 자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b>등록금 의존비율(40%미만 만점)</b> 심사
관련 학위 과정	• 폐지되는 <b>법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습권 보호</b> 를 위한 대책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b>구조개혁·특성화·국제화 실적</b>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b>연구윤리·학교교육 정상화 실적</b>
계	<b>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b>

## ▣ 설치인가 현황

- 설치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정원 3,960명) 중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걸쳐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설치인가 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법학부 폐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현황** (입학정원:명)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 (10개교)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강원대(40) <b>【3개교 240명】</b>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충남대(100), 전북대(80), 충북대(70), 제주대(40) <b>【7개교 650명】</b>
사립 (15개교)	고려대(120), 성균관대(12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한양대(100), 경희대(60), 아주대(5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건국대(40), 서강대(40) <b>【12개교 900명】</b>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b>【3개교 210명】</b>

## ▣ 설치인가 후 평가

### ● 평가 기구

- 설치 :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 구성 : 법학계 4인, 법조계 3인, 공무원 1인, 일반인 3인 [총11인]

### ● 평가 방법

- 본 평가 : 최초 2013년도부터,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
- 자체평가 : 본평가 2년 전 실시(최초 2011년도)

### ● 평가 내용

- 학칙, 교원 현황, 교육시설, 교육과정
-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 졸업 현황 및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 재무제표(재원 및 장학금) 및 향후 발전계획 등

## 3. 법학적성시험

### ▣ 시험 목적<sup>3)</sup>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수학 능력과 더불어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임
-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은 학부성적, 어학성적, 사회활동, 봉사활동, 면접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 시험 개요

- 시행 주체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정기관)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단,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
- 시행 시기 : 매년 7~8월 실시 (원서접수 5월, 성적발표 8월)
- 시험 영역
  - 언어이해 : 언어이해·의사소통·종합적인 사고 능력 측정
  - 추리논증 : 추리(reasoning)능력, 논증(argumentation) 능력 측정
  - 논술 : 분석적·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측정

3) 미국의 LSAT, 일본의 적성시험과 같은 목적의 시험임

## 4. 학생 선발

### ▣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결과

구분	주요내용	2012학년도 결과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전공을 가진 <b>학사학위 소유자</b></li> </ul>	지원자 9,956명 (최대 2개교 지원 가능)
선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정원 내 선발</b> : 2,000명(학교별 40~150명)</li> <li><b>정원 외 선발</b><sup>4)</sup> : 결원(신입생 미충원,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추가 선발</li> </ul>	총 2,092명 선발 정원 내 선발 2,000명 정원 외 선발 92명
선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일반전형</b> :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li> <li><b>특별전형</b> : 신체적 및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 계층 선발</li> </ul>	일반전형 1,958명(93.6%) 특별전형 134명(6.4%)
학생구성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타교출신</b> :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이외의 대학 출신자 1/3 이상 선발</li> <li><b>비법학사</b> :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3 이상 선발</li> </ul>	자교출신 561명(26.8%) 타교출신 1,531명(73.2%) 법학계열 1,131명(54.0%) 문과계열 727명(34.8%) 이과계열 212명(10.1%) 기타계열 22명(1.1%)

※ 연령별 : 22세이하 42명(2%), 23~25세 624명(29.8%), 26~28세 696명(33.3%),  
29~31세 389명(18.6%), 32~34세 185명(8.8%), 35세이상 156명(7.5%)

※ 의료인, 교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다수

## 5. 교육 과정

### ▣ 운영 형태

-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학위과정**’으로 수업연한은 **3년 이상**
  -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 운영 가능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국내·외 로스쿨에서 취득한 15학점 인정
  - 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인정

4)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간 편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원 외 선발’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실무과목 개설 및 실무수습 운영

- 필수실무과목(5개) :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 법원, 검찰, 로펌, 기업체 등 외부 협력기관을 확보·연계하여 실무수습 운영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외국어 강좌 20과목(3년) 이상 개설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술대회, 공동연구, 공동학위 등)

● 리걸클리닉 운영

- 무료법률상담, 실제 사건의 처리 참여 등으로 실무경험 및 사회봉사 기회 제공

▣ 학교별 특성화 과정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

학교명	특성화	학교명	특성화
강 원 대	환경	영 남 대	공익인권
건 국 대	부동산관련법	원 광 대	의생명과학법
경 북 대	IT법	이 화 여 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경 희 대	글로벌 기업법무	인 하 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고 려 대	GLP(국제법무)	전 남 대	공익인권법
동 아 대	국제상거래법	전 북 대	동북아법
부 산 대	금융해운통상	제 주 대	국제법무
서 강 대	기업법(금융법)	중 앙 대	문화법
서 울 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충 남 대	지적재산권
서울시립대	조세법	충 북 대	과학기술법
성 균 관 대	기업법무	한 국 외 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아 주 대	중소기업법무	한 양 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연 세 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 ▣ 학사관리

###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부터 공통 기준 적용

-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 시 제적 처리
- 엄정한 성적평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 실시 (단, 실무기초과목은 P/F 평가 가능)
- 상대평가 시 성적인플레 방지를 위해 학점 배분비율 공통 설정

A+	A0	A-	B+	B0	B-	C+	C0	C-	D
7%	8%	10%	15%	20%	15%	9%	7%	5%	4%

-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년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 제적 처리

## 6. 장학금 등 학생복지

### ●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학제도' 마련

- 2009년 3월 기준, 전액장학생 수혜자 비율 43.7%  
(설치인가 기준 20% 이상)

### ●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복지' 제공

-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마련
- 기숙사, 여학생 휴게실 및 육아시설, 체력단력실 등 제공

## 7. 변호사시험

### ▣ 시험 개요

#### ● 제1회 변호사시험이 2012년 1월 3일~7일 시행, 3월 23일 합격자 발표

#### ● '사법시험'은 선발 인원을 매년 감축한 후 2016년도 1차 시험 및 2017년도 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 계획

(舊) 사법시험	구 분	(新) 변호사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 검정</li> </ul>	시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li> </ul>	시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과목 35학점 이수자</li> <li>- 로스쿨 재학·휴학·졸업생은 응시 불가</li> </ul>	응시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스쿨 졸업자 및 (2월)졸업예정자</li> <li>- 졸업예정자는 석사학위 미취득 시 불합격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2월, 제2차 6월, 제3차 11월</li> </ul>	시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1월 제1회 시험 실시</li> <li>- 중간휴식일을 제외하고 4일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시험에 대하여 응시 횟수에 제한없음</li> </ul>	응시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내 5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형(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li> <li>- 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중 1개</li> <li>- 어학 : 영어(공인성적으로 대체)</li> </ul> </li> <li>논술형(2차)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li> <li>면접(3차)</li> </ul>	시험 방법 및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형 및 논술형 혼합 : 필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법(헌법, 행정법)</li> <li>-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li> <li>-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li> </ul> </li> <li>논술형 : 선택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개</li> </ul> </li> <li>선택형 : 법조윤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과목별 과락)</li> <li>- 최근 10년간 평균 합격률 4%</li> </ul>	합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목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과목별 과락)</li> <li>- 제1회 시험 합격률 : 입학정원의 75% 이상</li> </ul>

## ▣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 응시자 1,665명 중 1,451명(87.15%) 합격
- 법학사 552명(38%)/비법학사 899명(62%)

## 8.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 변호사 연수

### ▣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

- 법무부의 검사임용
  - 서류전형 및 역량평가를 통해 신입검사 42명 선발
  - 신입검사는 1년간 교육 실시 후 검사 직무 단독 수행
- 법원의 재판연구원(law clerk) 선발
  -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계약 직공무원

- 채용기간 2년, 2012년 100명 선발
-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에 따라,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 임용 가능, 재판연구원 이후에도 1년간 실무경험을 쌓아야 법관으로 임용가능.

## ▣ 변호사 연수

- 2011. 5. 17.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6개월간 연수제도 도입**
  - ①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 실시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국가기관, 국제단체, 일반기업체 등
  - ⇒ 2012년 2월말 기준 400여개 기관 신청
  - ②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10월) 수료
    -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변호사 개업실무를 비롯해 전문실무 분야까지 총 50여개 강좌 개설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수임 제한

## II.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

### 1. 실무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 ▣ 실무교육의 필요성 및 범위

##### ● 실무교육의 필요성

- 로스쿨법의 주된 목적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
- 로스쿨 졸업 후 6개월의 단기간 연수를 거쳐 법조인으로 진출하므로 사법연수원과 같은 집중적인 실무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음.

⇒ 일정수준 이상의 실무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법정필수실무과목(시행령 제13조 제1항) :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 ● 실무교육의 범위

- 협의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실무에서 사용되는 각종 법률문서의 작성 및 소송기술 등 실무적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
- 광의로 구체적 사안에 적용될 실정법이나 법이론을 발견해내고 법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법적 추론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 이론교육과의 구별이 아닌 유기적 융합이 필요

#### ▣ 실무교육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배분

- 실정법의 체계적 이해와 법해설과 관련된 이론교육은 법학교육의 출발점임.
- 법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이는 실제 사례의 해결 등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없음.
- 비법학전공자들의 경우 3년이라는 단기간에 법학의 기초이론부터 응용영역까지 모두 공부해야 함.
- 로스쿨 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실무교육의 강조가 이론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음.

● 전공과목 간의 통합교육 필요

- 실제 분쟁의 쟁점은 학교에서 강학상 나누는 전공영역별로 분리되어 발생하지 않음.
- 인접 전공과목과의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전공을 통합하는 융합과목의 신설과 강의방법이 필요

ex)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에 대한 team-teaching 실시

● 실무교수 임용과 재교육 프로그램

- 변호사와 교수의 임금 등 경제적 대우차이의 극복이 필요
- 실무교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방법의 개발 필요

ex) 논문중심의 평가 → 실무기록 또는 실무교육 중심의 평가

-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적 지식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

■ **실무교육 시행경험과 문제점**

● 현재 실무교수의 변호사 겸업 금지

- 새로운 실무적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
- Legal Clinic(임상법학)을 통한 실제 사건의 수임 및 처리 불가
- 안정적인 실제 사건의 확보에 어려움.
- 실무교수의 경제적 대우에 어려움.

⇒ 임상교수 등을 위하여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업 허용 필요

● 실무교육을 위한 예산의 확보

- 학내외 Legal Clinic(임상법학)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필요  
ex) 외부변호사의 초빙, 전담인력 등
- 실무교수 대우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

⇒ 정부의 재정지원 등 재원조달 방법이 필요

### ※ 로스쿨의 재정부담 증가

- 설치인가 기준 충족을 위해 학교별로 이미 상당 규모의 자금 투입
- 소규모 정원으로 인한 총 운영수입 중 매우 낮은 등록금 의존율(2011년 평균 34.2%).
-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정부지원은 미비함.
- 201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역량 강화(리걸클리닉) 사업으로 총 10억원을 25개 로스쿨에 지원

## 2.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 ▣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 ● 변호사시험부담에 따른 파행적 교육의 우려

-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수강이 아닌 시험과목 위주로 과목간 편중된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로스쿨에서의 학습이 아닌 사설학원 등에 의존하는 시험대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3학년의 경우 로스쿨 강의보다 시험준비에 주력하면서 파행적 학사과정의 운영이 불가피.

⇒ 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시험위주의 법조인 양성으로 변질될 수 있음.

#### ● 일정한 비율 이상의 합격률 보장으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전원 변호사 시험 합격 보장
- 변호사시험은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확인하는 절대평가로 시행되어야 함.

⇒ 응시인원 대비 일정비율 합격을 보장하여 교육의 정상화 실현

### ※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결정과정

-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관련자들 사이의 의견대립
- 법무부 시험응시가능 기간인 5년에 걸쳐 이루어진 누적합격률을 기준으로 제시
  - ⇒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정원 (2,000명) 대비 75%(1,500명)로 결정
  - ⇒ 제2회 변호사시험도 같은 인원(1,500명) 합격 예정

### ▣ 변호사시험 구성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 ● 시험유형 및 과목 구성의 문제

- 민사, 형사, 공법 등 필수과목의 경우 융합형으로 출제되므로 종래와 같은 시험준비로 합격에 어려움이 있음.
- 선택과목에 포함된 과목과 불포함 과목간의 불균형 발생 및 수험생의 부담 증가
- 선택형, 사례형 시험에 기록형 시험까지 포함되어 시험대비에 어려움.
  - ⇒ 선택과목 및 기록형 시험에 대한 개선 필요

### ※ 로스쿨 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시행

-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시행(2011년 8월 1회 시행, 2012년 8월 및 11월 2회 예정)
- 협의회에서 로스쿨 교수들을 중심으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통문제 출제 및 모범답안 제시
- 각 학교별 모의고사 시행 및 채점
- 학생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경험제공, 개별 학교별 출제에 의한 중복적인 노력 및 비용 절감
  -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출제에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간의 융합을 위한 표준적인 문제유형 및 난이도 제시